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Democratic Peace” and Its Evolutionary Potential*

Hyung-ik Choi**

Hanshin University

Abstract

On the academy of international politics, the theory linking democracy and foreign policy is called “the Democratic Peace.” To summarize the main argument of that theory, it claims that the countries adopting a democratic political system do not go to war each other and maintain peace. In other words, if a war breaks out, it has the implication that it will only be possible between democratic countries and anti-democratic or non-democratic countries. The United States is a representative country that has led the post-war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the “the Democratic Peace.” I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the international order after World War II, the United States faced the need to blockade the communist camp centered on the Soviet Union and unite the Western camp. In addition, a new foreign policy that could intervene in global affairs was required by abandoning the isolationist ideology that had long supported US foreign policy. This was called the Internationalist diplomatic line as a new foreign policy. One of the core ideologies that underpin the internationalist foreig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is the “the Democratic Peace.” The Republic of Korea is in a desperate position to prepare a new political foundation, at the same time, implementing a strategy for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iplomacy based on democracy. Two options are possible here. Will we reject the “the Democratic Peace” as a Cold War ideology, or will we preserve its core values and modify and supplement it in a more innovative form to suit with our national interests and changing international circumstances? This article seeks to explor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Hanshin University.

** Professor, Hanshin University. Email: ryancooler@gmail.com

the evolutionary potential of “the Democratic Peace” through the discussion of John Rawls’ Law of Peoples while critically exploring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Democratic Peace” from the latter point of view by comparing it with Kant’s ‘Perpetual Peace.’

Keywords

Democratic Peace, Perpetual Peace, Non-recognition, separate peace, Internationalism, Realism, Law of Peoples

“민주평화론”의 정치적 위상과 진화가능성*

최형익**

한신대학교

요 약

국제정치학에서 민주주의와 외교정책을 연계하는 이론을 “민주평화론”으로 부른다. “민주평화론”의 핵심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들끼리는 전쟁하지 않으며 평화를 지속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다른 말로 전쟁이 발생 한다면 민주주의 나라들과 반민주주의 또는 비민주주의 나라 사이에서만 가능할 것이 라는 함의를 지닌다. “민주평화론”에 입각해 전후 국제질서를 주도해온 대표적 국가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소련을 축으 로 하는 공산진영을 봉쇄하고 서방진영을 결속할 필요성에 직면했다. 게다가 오랫동안 미국의 외교정책을 떠받쳐온 고립주의 이념을 포기하고 전 세계적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교정책이 요청됐다. 이것이 바로 신(新)외교정책으로서 ‘국제주의’ 외교 노선이다. 미국의 국제주의 외교정책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이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민주평화론”이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국시로 간주할 정도로 한국에서 민 주주의는 국민적 충성도가 대단히 높은 정치이념이다. 이는 민주성과 투명성으로 요약 되는 K-방역 성공 등 수년간 이어져온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도 그 위력을 여실히 드 러냈다. 따라서 민주주의 가치를 신봉해온 우리 입장에서 국제적 민주주의 진영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다른 무엇보다도 대다수 국민들이 동조하지 않을 것이 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냉전 시대를 풍미한 “민주평화론”에 기반한 미국, 일본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힘을 마냥 신는다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원만한 대외관 계 유지 및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도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주 주의에 입각한 국제관계 및 외교 전략을 펼쳐가면서도 새로운 정치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절박한 위치에 있다. 여기에 두 개의 선택지가 가능하다. “민주평화론”을 단순한 냉 전이데올로기로 배격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평화론”의 핵심가치를 보존하면서 우리의 국익과 형편에 맞게 좀 더 혁신적 형태로 수정·보완할 것인가? 이 글은 후자의 관점에서 “민주평화론”의 정치적 함의를 칸트의 ‘영구평화론’과의 비교를 통해 비판적으로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신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교수. 이메일: ryancooler@gmail.com

탐색하는 가운데 존 롤스의 ‘만민법’ 논의를 통해 “민주평화론”의 진화가능성을 모색한다.

주제어

민주평화론, 영구평화론, 불승인주의, 분리된 평화, 국제주의, 현실주의, 만민법

I. 서론

작년 6월 14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존슨 영국 총리는 루스벨트와 처칠의 ‘대서양헌장’을 연상케 하는 ‘신(新)대서양헌장’(The New Atlantic Charter)을 채택했다.¹⁾ 여기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민주주의였다.

“우리는 민주주의 원칙, 가치, 제도와 열린사회를 수호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우리 시대의 중요한 도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투명성, 법치주의, 시민 사회, 독립된 언론을 지지한다. 우리는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고 모든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수호할 것이다.”

국제정치학에서 민주주의와 외교정책을 연계하는 이론을 “민주평화론”으로 부른다. “민주평화론”의 핵심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끼리는 전쟁하지 않으며 평화를 지속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다른 말로 전쟁이 발생한다면 민주주의 나라들과 반민주주의 또는 비민주주의 나라 사이에서만 가능할 것이라는 함의를 지닌다.

이 글은 민주평화론에다 인용부호(“”)를 붙인다. 일종의 의문표시다. 그 이유는 냉전시기 서방진영을 결속시키는 과정에서 공산주의 진영과의 항구적 대립을 정당화하는 식의 정치적 편향(political bias)를 드러

1) ‘신대서양 헌장’ 내용에 대해서는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6/10/the-new-atlantic-charter/> 참조.

냈기 때문이다. 요컨대, “민주평화론”은 일반(universal)명사가 아니다. 몇 해 전에 ‘기생충’을 연출한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상에 대해 지적인 바와 같이 “민주평화론” 역시 고유(local)명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민주평화론”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합의 내지 전반적 지지를 획득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냉전시기 공산주의 진영을 포함한 제3세계 등 지구촌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민주평화론”에 동조하지 않았다. 탈냉전기 이슬람 사회의 분열과 갈등, 중국의 부상, 북한 핵문제 등 “민주평화론”의 시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제적 갈등 역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민주평화론”에 입각해 전후 국제질서를 주도해온 대표적 국가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소련을 축으로 하는 공산진영을 봉쇄하고 서방진영을 결속할 필요성에 직면했다. 게다가 오랫동안 미국의 외교정책을 떠받쳐온 고립주의 이념을 포기하고 전 세계적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교정책이 요청됐다. 이것이 바로 신(新)외교정책으로서 ‘국제주의’ 외교노선이다. 미국의 국제주의 외교정책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이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민주평화론”이다.

“민주평화론”과 국제주의 외교정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탈냉전 및 ‘미국제일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한 트럼프즘(Trumpism)의 등장으로 다소 부침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특히, 민주평화론”은 중국의 ‘신형대국관계(New type of Great-power Relations)’ 수립 요구에 대처하는 데 있어 미국과 동맹국들을 결속시켜 줄 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론”의 재해석을 통한 중국 봉쇄전략의 유용한 근거를 제공한다.

쿼드 결성 등 인도태평양 전략의 발진은 “민주평화론”에 입각한 미국주도의 새로운 군사동맹전략의 일단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간 중국의 ‘사할적 이익’(vital interest)으로 불문 시 돼온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관여 언급은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긴장을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경우, 역내 주요국 가운데 하나인 대한민국 역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외교 갈등과 군사적 긴장 격화에 자유로울 수 없다.²⁾

해방 이후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국시로 간주할 정도로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국민적 충성도가 대단히 높은 정치이념이다. 이는 민주성과 투명성으로 요약되는 K-방역 성공 등 수년간 이어져온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도 그 위력을 여실히 드러냈다. 따라서 민주주의 가치를 신봉해온 우리 입장에서 국제적 민주주의 진영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다른 무엇보다도 대다수 국민들이 동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냉전 시대를 풍미한 “민주평화론”에 기반한 미국, 일본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힘을 마냥 신는다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원만한 대외관계 유지 및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도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국제관계 및 외교 전략을 펼쳐가면서도 새로운 정치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절박한 위치에 있다. 여기에 두 개의 선택지가 가능하다. “민주평화론”을 단순한 냉전 이데올로기로 배격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평화론”의 핵심가치를 보존하면서 우리의 국익과 형편에 맞게 좀 더 혁신적 형태로 수정·보완할 것인가? 이 글은 후자의 관점에서 “민주평화론”의 정치적 함의를 칸트의 ‘영구평화론’과의 비교를 통해 비판적으로 탐색하는 가운데 존 롤스의 ‘만민법’ 논의를 통해 “민주평화론”의 진화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통해 이러한 형태의 국제질서 구조가 재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글로는 장세호(2022) 참조.

II. “민주평화론”의 사상적 기초: 칸트의 ‘영구평화론’

계몽 시대 최고의 철학자라 할 수 있는 칸트는 영구평화라는 세계질서 개념을 수립함으로써 ‘만국의 만국에 대한 투쟁’이라는 홉스적 세계관을 비판할 수 있는 대안적 사상의 초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칸트는 프랑스 혁명정부와 프로이센이 체결한 바젤 평화조약의 결과를 지켜보았다. 프로이센의 옛 수도 쾨니히스베르크³⁾에서 세상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던 그는 일반적인 격변 속에서 희미하지만 더욱 평화로운 새로운 국제 질서가 시작되는 것을 감지했다.⁴⁾

칸트는 20대 중반에 '7년 전쟁'을 경험했다. 1756년 프랑스, 오스트리아, 작센, 스웨덴 그리고 러시아는 군사동맹을 맺어 프로이센, 하노버 공국, 그리고 영국과의 전쟁에 돌입하여 1763년에 파리조약을 맺었다. 전쟁 결과는 참혹했다. 칸트는 제국주의 식민 지배 소식도 가슴 아프게 들었다. 그러했기에 칸트는 1775년 미국 독립 전쟁을 적극 지지하고 옹호하는 활동을 했다. 그는 1789년 프랑스 혁명에도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프랑스 인민은 정복을 목표로 삼는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포기”하며 “프랑스 인민은 다른 어떤 인민의 자유에 대항하여 프랑스 인민의 힘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쟁 반대를 천명한 프랑스 헌법(1791)에 대해 감명 받았다.

3) 쾨니히스베르크는 발트 해에 연한 항구도시로 현재 지명은 칼리닌그라드이다. 원래는 독일 영토였지만 알타협정에서 소련에 양도됐다. 러시아의 유일한 역외(域外) 영토이다.

4)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대한 연구로는 김원식(2021), 김종국(2000), 김준석(2014), 박배형(2016), 배성민(2017), 이재현(2013;2014), 이해정(2008), 임미원(2010), Bernasconi(2001), Brown(2005), Caranti(2006), Cavallar(2001), Desch(2011), Doyle(1983a;1983b;1986), Harrison(2002;2004), Hurrell(1990), Jahn(2005), Lynch(1994), MacMillan(2006), Pojman(2005), Russett and Starr(2000), Martin(2003) 참조.

프랑스 혁명이후 전쟁이 벌어지자 유럽의 정치상황은 칸트의 소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 스페인과 함께 프랑스 혁명에 개입하며 1792년과 1793년에 각각 프랑스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초기에는 프랑스가 불리했으나 곧 반격하여 전세가 뒤집혔다. 1795년 강화협상에 들어갔고 그해 가을, 바젤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바젤조약으로 프로이센은 프랑스 혁명정부를 승인했고 10년간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바젤조약에는 라인강 지역의 프로이센 영토를 평화가 회복될 때까지 프랑스의 점령 하에 둔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라인강 지역의 프로이센 영토를 프랑스에 양도한다는 비밀조항을 포함했다. 영토할양에 관한 비밀조항이 공개되면서 프로이센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분노와 프랑스에 대한 증오가 폭발했다. 평화조약이 오히려 계속적인 전쟁의 빌미와 명분을 제공하는 역설적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그에 따라 영구평화를 희구하는 칸트의 고뇌는 깊어져 갈 수 밖에 없었다.

1. ‘영구평화론’의 세 가지 확정조항

칸트는 『영구평화를 위하여: 하나의 철학적 기획』이라는 소논문에서 국가 간의 영구평화를 위한 초안을 작성했다.⁵⁾ 이 저술은 1795년 프랑스와 프로이센 사이의 바젤 평화조약 직후 쓰여진 것으로 영구평화를 위한 조약형식으로 기술됐다. 그래서 글의 형식 또한 예비조항, 확정조항 및 비밀조항을 가지는 당시의 평화조약의 형식을 따랐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소질을 계발시키기 위해 자연이 사용하는 수단, 이러한 대립이 사회의 합법칙적인 질서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한

5) 『영구평화를 위하여』는 짧은 글임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앞선 통찰력으로 가득 차 있다. 평화로운 국제 정치질서에 대한 희망과 세계시민주의적 이상을 담고 있는 서양 근대의 대표적 저술로 알려져 있으며, 이 저술로 칸트는 “영구평화를 위한 체계적 논변을 제시한 최초의 철학자”(Pojman, 2005:62)로 평가되기도 한다.

에서, 인간사이의 ‘적대’(antagonism)이다.

“여기서 ‘적대’란 인간의 비사회적인 사회성(unsocial sociability)을 의미한다. 곧 끊임없이 사회를 파괴하려고 위협하는 항구적 저항들과 결합해 있으면서도 사회를 이루고 살려는 인간의 근본적 성향 말이다”(Kant, 1991a:36).

“비사회적 사회성”이 역사 속에서 발현된 결과는 이중적이다. 이것은 인간들을 한 데 결합시켜 안전과 복지에 필요한 것들을 수행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 산물의 분배와 지배를 놓고 대립하게 한다.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폭력을 동반한 자연적 진화는 자유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경향을 지닌다.

“비사회적 사회성”은 불가피하게 공화제를 가져오고 공화제는 자유평화의 근원을 이룬다. “비사회적 사회성”은 공화제뿐만 아니라 대안적인 국제질서를 창출하는 데도 근원을 이룬다. 국제질서의 문제는 “인류가 해결하기에 가장 어려운 최후의 문제”에 속한다. 인간은 국가를 만들어서 그들의 열정을 억제할 수 있었지만, 국가들은 그렇지 않다. 마치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들 마냥 개별국가는 “흉폭한 무법 상태”를 겪는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자국의 절대적인 자유보존을 추구했다.

하지만 국가 간 충돌로 인해 “대대적인 파괴와 격변, 심지어 내부적으로 완전히 힘이 고갈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람들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간은 “인류의 거대한 무덤”이 초래하는 평화냐 아니면 합리적인 구상에 의한 영구평화냐의 선택에 직면한다. 칸트는 이런 조건에서 서로 적대하지 않고 국내외적으로 투명하게 행동하겠다고 약속하는 공화국들의 자발적 연합, 곧 국제연맹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Kant, 1991a:40).

공화정만이 국가 간 권력추구 수단으로서 전쟁권을 포기하고 항구적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국내적 기초이다. 바로 여기서 훗날의 “민주평화론”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할 수 있는 “각 국가에서 시민적(헌정)체제는 공화적이어야 한다”는 영구평화를 위한 제1확정조항이 도출된다. 공화국의 시민들은 전쟁을 생각할 때 독재적인 통치자들과는 달리 자신들이 전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화를 구축할 것이다.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국가시민들의 동의가 요구될 때, 국가시민들은 그들에게 닥칠 전쟁의 모든 고통들, 곧 전쟁이 있게 되면, 자신들이 전투를 해야 하고, 전쟁비용을 그들 자신에서 치러야 하고, 전쟁이 남길 황폐를 고생스럽게 보수해야 하고, 넘쳐나는 재앙에 결국은 평화자체를 씹쓸하게 만드는, (가까이 있는, 늘 새로운 전쟁으로 인하여) 결코 변제할 수 없는 채무 부담 자체를 떠맡는 일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토록 고약한 놀음을 시작하는 것에 매우 신중하리라는 것보다 자연스런 일은 없다”(Kant, 1991c:100).

칸트는 통치방식으로서 공화제에 의존하는 정치체제만이 국가들 사이의 평화를 가능케 한다고 전망했다. 공화제를 영구평화의 근거로 하는 제1확정조항을 보완하는 제2조항이 바로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제에 기초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공화제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들의 평화연맹으로서 평화조약과 구별된다. 칸트에 따르면, 평화조약은 단지 하나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반해, 평화연맹은 모든 전쟁의 종식을 의도하기 때문이다.

칸트는 평화연맹에 기초한 국제법 만으로 영구평화를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넘어선 세계의 모든 시민을 결합하는 세계시민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영구평화를 위한 세 번째 3확정조항은 세계시민법과 관련한 것으로 앞의 두 조항과 달리 공법이 아닌 사법 형식을 취한다. 그 이유는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해야”하기 때문이다.

칸트는 세계시민법에 대해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도착했을 때 적대적으로 취급받지 않을 권리를 요구하지만 이 권리는 그들이 그 지역 주민들과 통상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다”(Kant, 1991c:106)라고 분명히 말한다. 우호와 환대는 외국인이 추방당했을 때 갈 곳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세계시민법은 타 국가 또는 타 지역을 방문할 권리에 한정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요구, 주장할 수 있는 별도의 체류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 땅의 주인을 이루고 사는 원주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이는 훗날 월슨의 민족자결론의 토대가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칸트의 영구평화론의 핵심은 첫째, 대의제에 상응하는 입헌질서에서 연원한 공화정, 둘째, 국가 간 불간섭 원칙이 적용되는 자유국가들의 평화연맹, 셋째, 국가들에 의해 존중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사적 권리를 집약한 세계시민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칸트의 ‘평화사상’이 새롭게 조명받게 된 계기는 1980-90년대,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영구평화론’이 “민주평화론”의 옷을 입고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후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국제정치학계는 물론, 정치사상, 철학, 법학 등 각 분과에 영향을 미치며 논의를 재생산해왔다. 이 가운데 대표 주자가 바로 국제정치학 분과의 “민주평화론”이다.⁶⁾ 그러므로

6) “민주평화론”에 대해 최근, 국제정치학계에서 국내외적으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관한 논의는 “민주평화론”에 대한 논쟁과 자연스레 연동될 수밖에 없다.

2. 공화정의 평화애호는 과연 선험(先驗)적인가?

칸트의 ‘영구평화’ 구상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영구평화론’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 제1확정조항에 대한 평가다. 칸트의 제1확정조항은 이론과 실제의 괴리뿐만 아니라 이론 내적으로도 상당한 모순이 존재한다. 그 가운데, 특히 칸트의 ‘공화정’에 대한 이해가 그러하다.

먼저, 칸트와 동 시대에 공화정 또는 대의제를 채택한 나라가 미국, 영국, 네덜란드 외에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칸트가 참조할 만한 공화정의 실증사례, 한마디로 공화정에 관해 충분히 연구할만한 개체수가 너무 적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게 칸트로 하여금 ‘영구평화론’에 공화정 국가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공화정과 민주정의 차이에 관한 그의 관점은 현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대단히 편향적이며 학문적 근거를 상실한 독단에 가까운 것이다. 칸트는 통치방식에 따른 정체 분류를 선호한다. 이 분류방식은 통치형식으로서 입헌주의에 기초한다. 통치방식에 따른 정체분류란 국가가 자기의 전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자면, 정치체제는 공화정 아니면 전제정, 둘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연구로는 김범석(2005), 김석우(1997;2011), 김재천(2004;2009), 마상윤(2005), 신육희(2002), 오영달(2018), 이해정(2008), 이호철(2004), 현인택(2004), Barkawi and Laffey(2001), Barnett(2006), Brown et al.(1996), Carothers(2006), Chan(1997), Ish-Shalom(2006), Rosato(2003), Russett(1993), Gowa(1999) 참조.

“공화정은 정부의 통치권력, 즉 집행권 내지 행정권을 입법권에서 분리하는 국가원리이다. 전제정은 국가 자신이 수립했던 법률들을 국가가 독단적으로 집행하는 국가원리이다. 그러니까 공적 의지는 통치자에 의해 그의 사적 의지로 취급되는 한에서 공적 의지인 것이다. 세가지 국가형식, 즉 독재정(군주권력), 과두정(귀족권력), 민주정(인민권력) 가운데서 민주정의 형식은 낱말의 본래적 뜻에서 필연적으로 전제정이다. 왜냐하면 어떤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반대자가 있다 해도 형식에 있어 모두가 결정하는 식의 단일한 행정권을 민주정은 창설하기 때문이다. 이때 결정을 내리는 모두가 온전히 전부는 아닌 까닭에 민주정은 일반의지는 물론 자유와도 모순된다”(Kant, 1991c:100).

칸트가 보기에 “대의제이지 않은 모든 통치형식은 불구”이다. 따라서 “대의제를 통해서만 공화적 통치방식이 가능하고 이 제도가 없는 통치방식은 그 헌정체제가 무엇이 됐든 간에 전제적이고 폭력적”(Kant, 1991c:102)이다. 왜냐하면, “입법자가 동일한 인격에서 동시에 자기의 지의 집행자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적 전제 위에 칸트는 입헌적 대의제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 참 멀던 프로이센을 거의 공화정 범주에 포함시키는 비약을 선보였다.

“민주정 외에 군주정이나 귀족정 등 다른 두 국가체제가 대의적이지 않은 통치방식에 여지를 주는 한에서 언제나 결합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체제들이 대의제의 정신에 맞는 통치방식을 받아들이는 일은 그 체제에서 적어도 가능하다. 가령 최소한 프리드리히 2세가 자기는 한낱 국가의 최상위 중복일 따름이라고 말한 것과 같이 말이다”(Kant, 1991c:101).

“공화정이 영구평화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체제”이며 “공화적 헌정 체제는 법 개념의 순수한 원천에서 발생한 그 근원의 순정성외에도 바라마지 않던 결과에 대한, 곧 영구평화에 대한 전망 또한 갖는다”(Kant, 1991c:99)는 칸트의 언급은 적어도 정치학적 관점에서는 근거가 대단히 부실한 추론이다. 공화정을 전제로 한 제1확정조항과 제2확정조항은 그러므로 적어도 칸트가 살던 18세기 말의 역사적 조건에서는 실현가능성이 전무했던 먼 미래의 계획이거나 사실 하나의 공상에 가까운 주장이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칸트가 언급한 전쟁 발발에 관한 공화정과 비공화정의 정치적 동기 역시 그다지 적실성을 지녔다고 볼 수 없다. “공화정은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전쟁 발생의 유인이 낮지만 공화정이 아닌 나라들은 전쟁을 지배자의 유희로 간주하기에 전쟁을 쉽게 도발할 수 있다”(Kant, 1991c:100)는 칸트의 이론적 전제는 역사에 대한 몰이해에 가깝다. 군주정이나 비공화정, 심지어 전제정 또한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이 반동적 군주정이 우글대던 1830년대의 유럽 한 복판에서 등장한 것도 바로 유사한 맥락에서다.⁷⁾

칸트의 소망과 달리 유럽 국가들은 공화국들 간의 평화연맹을 건설하지 못했을 뿐 더러 두 차례의 처참한 전쟁을 벌였다. 실제 역사에서 유럽에 가장 오랜 평화를 가져다 준 국제질서는 현실주의적 권력정치

7) 칸트와 달리 프로이센의 장군이자 군사전략가였던 클라우제비츠는 전쟁과 정치체제와는 별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전쟁은 단지 정치 자체와 관련이 있을 뿐이다. “전쟁은 정치의 수단이다. 전쟁은 반드시 정치의 성격을 지녀야 하며 정치의 척도로 재야한다.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는 일은 그 주요요곽을 볼 때 정치 그 자체이다. 이때의 정치는 펜 대신에 칼을 들지만 정치 그 자체의 법칙에 따라 생각하는 일을 멈추지는 않는다”(Clausewitz, 2009:182).

와 세력균형에 기반을 둔 비엔나 체제(Vienna Concertation)였다. 특히, 기독교와 정통왕조를 공통분모로 하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가 신성동맹을 체결해 유럽의 질서를 회복하고 안정을 가져왔다(Kissinger, 1994:82-91).

칸트의 영구평화 구상 가운데 제1, 제2확정조항은 당대에는 실현 불가능했고, 120여년 후, 윌슨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실현가능했던 미래적 계획이었다.⁸⁾ 요컨대, 칸트는 정치체제로서의 공화정에 관해 그다지 정통하지 못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법 개념의 순수한 원천에서 발생한 그 근원의 순정성” 관점에서 바라본 칸트의 공화정 개념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정언명령 내지 이상적 윤리준칙에 가깝다. 칸트는 공화정을 심지어 “천사들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너무나 고귀한 목적을 지닌 현정체제”(Kant, 1991c:112)로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 발전한 공화정은 이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칸트가 주장한 공화정 내용이 적실성이 없다는도 해서 칸트의 평화사상 전체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의 “민주평화

8) 이현휘(2016:10)는 끊임없이 외부압박에 의한 체제전환, 곧 레짐체인지를 강요하는 대표적 국제정치이론을 윌슨주의로 통칭되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로 지목한다. 윌슨주의의 요체는 지구상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확산되어야만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쟁은 결국 비민주적 국가가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윌슨주의는 결국 무력을 수단으로 비민주적 국가를 민주적 국가로 변환시키는 ‘레짐 체인지’ 정책으로 귀결된다. 그는 윌슨주의의 철학적 기반이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윌슨주의의 철학적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만나게 된다. 하지만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국제정치 현실과 동떨어진 칸트의 이성 중심 철학에 입각해서 입론된 것이었다. 칸트는 자신의 영구평화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치러야 할 영구전쟁의 참상(perpetual war for perpetual peace)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프랑스 혁명처럼 실제 현실에서 존재하는 비공화정을 공화정으로 급격하게 변화시킬 때 무자비한 폭력이 파생될 수 있다는 사실에 몽매했기 때문이다. 대쉬(Desch, 2007/2008;2011나 베르나스코니(Bernasconi, 2011)와 같은 학자들이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자유주의적 제국주의(liberal imperialism), 자유주의적 비자유주의(liberal illiberalism), 전면전(total war)의 원천 등으로 비판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론” 역시 칸트의 공화제 이론에 반드시 근거할 필요는 없다. “민주평화론”은 오히려 역사적 발자취를 따라 발전해온 현대 민주주의의 이론에 기초하는 게 보다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역사를 통해 발전한 현대 공화정의 기초는 이성이나 도덕적 원칙이 아닌 욕망에 기초한 이해관계였다. 칸트가 ‘영구평화론’을 저술한 1795년은 미국 연방헌법 제정기와 시대적으로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미국 헌법의 저자라 할 수 있는 매디슨의 공화정에 대한 이해와 칸트의 그것을 함께 비교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연방헌법 비준을 위해 해밀턴, 제이와 함께 공동작성한 『연방주의자 교서』(Federalist Papers)에서 매디슨은 권력분립과 연방제를 미국 공화정의 핵심제도로 간주했다. 매디슨이 새로운 공화정체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가장 심각히 고려한 것은 ‘파당(派黨)’의 문제였다. 그에게 파당은 공화주의적 덕성과는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었다. 덕성이 개인의 사적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선호하는 반면, 파당은 사리를 공익보다 우위에 두기 때문에 공화정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친다.

“파당의 잠재적 원인은 인간의 본성에 그 씨가 뿌려져 있다. 그리고 우리는 파당의 원인이 어디에서나 시민사회의 상이한 환경에 따라서 상이한 정도의 활동을 하게 됨을 본다”(Hamilton, Madison & Jay, 1961:79).

매디슨은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10편에서 미국인들이 파당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아니, 벗어날 수 없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겠지만 말이다. 매디슨이 보기에, 민주정 및 공화정 등 소위 ‘인민의 정부’가 최종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위험이 바로 파당이였다. 공화정이 시민의 덕성에 의존한다고 믿는 것은 대단히 순

진한 발상이다. 따라서 그가 강조하고자 했던 내용은 기존의 시민적 덕성과 애국심에 새로운 발상을 더해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공화정 체제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매디슨은 파당효과를 완화하며, 공화정 설립을 위한 새로운 발상을 연방헌법에 의해 세워질 국가가 지니는 장점, 곧 이해관계의 다양성에서 비롯된 정치적 갈등의 완화효과에서 발견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 헌법이 도입한 정치제도가 바로 광역공화국으로서의 연방제와 삼권분립에 기초한 대의제이다.

토크빌의 유명한 『미국의 민주주의』는 민주공화정의 파고가 거세게 밀어닥친 1830년대의 아메리카 전역을 여행하고 남긴 미국 정치체제의 특징에 대한 가감 없는 기록이다. 토크빌(Tocqueville, 2002:59)은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으로 ‘개인들의 평등한 사회조건’과 여기서 연유한 강한 평등의식을 꼽았다. 그 이유는 경제적 상승의 기회가 많고 다양한 이민 집단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평등의식은 독립과 자유에 대한 강한 의식을 낳았으며, 이것은 다시 인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시장제도 하에서의 강한 평등의식은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평등의식은 사회구성원들을 서로 고립시키고 극단적인 이기심과 물질적 탐욕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기회의 평등, 보통선거권, 인민주권론에 구현된 평등의식은 대중을 때로는 광폭한 다수로 만들어 ‘다수독재’를 낳을 수 있다는 게 토크빌의 최종 결론이었다. 이처럼 공화정과 민주정의 융합으로 실현된 미국의 공화정은 칸트가 이해한 공화제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미국의 초기 외교정책 또한 칸트가 영구평화의 두 번째 확정조항으로 표명한 ‘평화연맹’과 같은 이상주의 정책 추구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 프랑스 공화정이 대혁명 이후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 단일 유럽국가 건설을 목표로 정복전쟁에 나선 반면, 대서양 건너편에 위치한 신생 공화국 미국이 채택한 대외정책은 ‘고립주의’였다. 워싱턴의 대통령직

고별연설에서 기초가 마련된 ‘고립주의’는 쾨시 애덤스 국무장관의 손을 거쳐 1823년 작성된 ‘먼로독트린’으로 구체화됐다.

미국이 고립주의를 주창한 보다 뿌리 깊은 이유는 예외주의 신조에서 비롯된다. 곧, 미국의 공화정체는 인류역사에서 대단히 특수하고 예외적 사건으로 구체제 유럽에서는 애당초 성립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평화연맹’이건 ‘세력균형’이건 유럽 문제에 개입하거나 가능하면 엮이지 말라는 게 건국의 아버지들의 충고였고, 후손들은 초당적으로 선조의 유지를 받들었다. 칸트의 바람과 달리, 당시 대표적 공화정 국가였던 미국은 평화연맹 건설에 어떤 관심도 표명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고립주의를 대외정책의 지침으로 천명했으면 이러한 상황은 한 세기 이상 지속됐다.

그러다가 두 차례의 세계전쟁을 통해 국제정치적 혁명이라 할 만한 갑작스런 대전환의 시대가 찾아왔다. 전 세계적 차원의 격동이 발생했다. 이러한 국제정치적 계기를 통해서 윌슨주의가 등장했다. 칸트가 ‘영구평화론’에서 표방한 세 가지 확정조항을 실현할 만한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민주공화정이 국제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체제라는 신념하에 윌슨 대통령은 요즘 ‘레짐 체인지’라 일컫는 ‘국내 정치체제의 전환’을 전쟁 목표로 설정했다. 나아가 칸트의 평화연맹 주장과 대단히 유사한 국제연맹의 건설을 통해 집단안전보장을 구현하려 했으며, 민족자결을 통해 세계시민법의 토대를 형성하려 시도했다.

이론과 역사적 현실 사이의 ‘시간지체’(time-lag)의 관점에서 칸트의 세 가지 확정조항과 민주평화론의 핵심 명제를 함께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두 세기에 걸친 미국 대외정책의 전개과정과 ‘영구평화론’의 세 가지 확정조항을 비교해보면 대단히 흥미있는 결과가 도출된다. 칸트의 영구평화를 위한 세 가지 확정조항 가운데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확정조항은 ‘국제 평화연맹’과 관련된 두 번째 조항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용이한 조항은 역설적이게 세 번째 확정조항

인 국제시민법의 존재이다.

칸트가 언급한 영구평화를 위한 세 가지 확정조항은 동시에 달성되지 못하고 역사적 현실과의 일정한 시간지체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외정책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칸트가 언급한 세 가지 확정조항의 내용과 미국의 대외정책은 대체로 일치하여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Ⅲ. “민주평화론”과 ‘분리된 평화’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민주평화론”을 둘러싼 최대 쟁점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분리된 평화’에 대한 논쟁을 평가해 보기로 하자. 구체적으로 영구평화의 제1확정조항을 통해 공화정 국가들 사이에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제2확정조항을 통해 평화연맹은 공화국 내지 자유로운 국가들에게만 ‘회원자격’(membership)을 부여하는지에 대한 유추해석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칸트가 ‘영구평화론’에서 문자그대로의 ‘분리된 평화’를 주창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가 언급한 세 가지 확정조항은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고 동시에 건설해야 온전한 평화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 가지 확정조항을 동시에 충족하는 형태의 영구평화란 실제 현실에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아포리아에 가깝다. 그렇기에 실제의 역사적 현실에서 ‘영구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 세 가지 조항 가운데 어느 하나가 선행하거나 후행하는가 여부를 구분하고, 둘째, 어떤 조항이 ‘영구평화’를 위해 더 필수조건인가를 분리해서 논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계승하면서도 시대상황의 변화에 맞게 재구성하려 했던 “민주평화론”의 문제의식이

도출됐다고 여겨진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민주평화론자’들이 ‘분리된 평화’ 주장을 통해 칸트를 왜곡시켰다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 보다 정확한 평가를 내릴 필요가 있다. 국제정치 담론으로서의 “민주평화론”에 대한 비판자들은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재해석하여 “민주평화론”을 도입한 대표적 학자인 도일(Doyle)이 칸트의 제1확정조항의 공화정을 서구에 실재하는 “자유주의적 공화정”과 등치시킴으로써 제2확정조항의 평화연방의 구성원을 공화정으로 제한했고, 공화정의 평화연합에서만 가능한 “존중의 보장”을 ‘발견’하여 ‘분리된 평화론’을 창안했다고 비판한다. 레비(Levy, 1989)와 같은 학자는 “분리된 평화”(separate peace)의 틀에서 강조되는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의 ‘전쟁의 부재 원칙’이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 강조하는 세력균형에 버금갈 정도의 국제정치의 법칙으로까지 격상됐다고 주장한다.

도일에 따르면, 칸트의 자유주의는 공화정들 사이의 평화와 이들과 비공화정 간의 전쟁을 동시에 설명한다. 여기서 도일이 분리된 평화와 전쟁에 대한 칸트의 설명으로 제시하는 것은, 공화정은 다른 공화정에 대해서는 “우호감”에, 비공화정에 대해서는 “적대감”에 기반해 행동한다는 것이다(이혜정, 2008:136). 요컨대, 칸트가 언급한 평화연맹을 구성하는 자유국가들은 독립적인 주권국가의 의미이지, 독일의 해석처럼 민주주의 나라들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MacMillan, 2006). 그러므로 자유주의의 이념과 결합된 독일의 사회과학적 ‘의지’는, 칸트의 텍스트를 무시하고 칸트 평화사상의 도덕적 명령을 배반하며, 평화연맹 ‘안’과 ‘밖’의 전쟁의 대립구도를 확립했다(Hurrell, 1990)는 게 이들 비판의 핵심 요지다.

그렇다면 도일이 주창한 “민주평화론”은 칸트의 ‘영구평화’ 사상을 왜곡한 것일까? 다음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칸트는 “공화정이 영원한 평화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체제”로 “영원한 평화에 대한 전망을 갖

는다”(Kant, 1991c:100)고 분명히 말했다. 왜냐하면, “공화정만이 인간의 권리에 완전하게 부합하는 유일한 체제”이기 때문이다. 평화연맹이 성립되는 역사적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세 가지 확정조항 사이에는 시간지체가 불가피하며, 따라서 세 가지 확정조항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기간 “분리된 평화”가 성립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서서히 팽창하여 모든 국가를 포괄함으로써 영구평화에 이르게 된다는 연방주의 아이디어가 실현가능하고 객관적 실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다. 다행히도 어떤 막강하고 계몽된 나라가 (그 본성상 영구적인 평화로 향할 수밖에 없는) 공화정을 채택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 사이에 연방적 통일의 중심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연방의 구심을 형성한 최초의 국가와 함께 동맹을 결성함으로써 국제법의 이념에 맞게 각국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방식의 더 많은 결합을 통해 점점 더 널리 확산해 나갈 것이다”(Kant, 1991c:105).

도일, 러셋 등 “민주평화론” 주창자들이 칸트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자신들의 이해에 맞게 재단했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롤스 또한 “민주평화론”을 다룬 도일의 논문이 훌륭하며, 특히 칸트의 대한 도일의 해석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Rawls, 2000:87). 다만, ‘민주평화론자’들이 칸트가 살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역사적 조건, 곧 200년이 지난 세기의 전환기에서 ‘영구평화론’의 특징요소, 가령 제1확정조항을 타 조항에 비해 보다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 그게, ‘영구평화론’이 지닌 고유한 특징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적 이유만으로 “민주평화론”이 “분리된 평화” 주장을 별 다른 성찰 없이 고수하는 양상에 대해서는 비판할 필요가 있다.

“민주평화론”의 이론적 한계는 곧 현대 국제정치학계 논의 지평의 한계이기도 하다. 이 한계는 국제정치이론 내부의 논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필자가 롤스의 ‘만민법’에 주목하는 이유도 이와 동일하다. 철학과 법학, 정치사상분야에서는 롤스를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연관지어 다루고 있지만 국제정치학계에서는 롤스의 ‘만민법’ 관련 논의가 전무한 실정 역시 이런 사정을 반영한다. 요컨대, 칸트의 ‘영구평화론’의 역사적 의의는 이론적 정교함이나 실천적 적실성에 있지 않다. ‘영구평화론’의 진정한 위대함은 홉스적 세계관에 입각한 정치현실주의에 안주하지 않았던 발상의 대전환과 두 세기 후어나 펼쳐질 국제관계 질서를 앞서 예비한 비범한 통찰력에 있다.

칸트의 국제정치에 대한 관점은 현실주의인가 아니면 이상주의인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어왔다. 결론부터 말하면 칸트는 혼종, 곧 하이브리드 사상가이며, 비교사상적 관점에서는 이상주의(Idealism)에 가깝다. 그의 ‘영구평화론’은 자유주의적 국제관계의 핵심을 최초로 체계화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 그게 칸트 평화사상의 정확한 자리매김이다. E. H. 카의 경우, 칸트를 자유주의적 이상주의의 창시자 가운데 하나로 지목한다. 카(Carr, 2000:48)에 따르면, 칸트는 “전쟁이란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국민들의 이익은 돌보지 않는 군주들이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공화정에서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신현실주의자로 잘 알려진 월츠는 칸트 국제관계론의 ‘현실주의적’ 측면에 주목하여 칸트를 ‘권력 정치(power politics)’를 대변하는 학자로 간주했다. 월츠(Waltz, 1962:331)에게 칸트는, 자연상태에서 국가는 “조화와 평화”가 아니라 “적대와 전쟁” 상태에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국제관계에서 “권력정치”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당시 유행하던 자유주의 외피를 두름으로써 자신의 마키아벨리적 아이디어를 감췄던 권력정치 이론가”였다.

월츠의 이러한 지적은 일면적이고 편향된 것이다. 우리는 칸트가 정치사상가나 국제관계 이론가가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의 본업은 계몽주의에 기반한 독일 관념철학이었다. 따라서 그의 정치이론은 성과만큼이나 한계 역시 뚜렷하다. 다만, 도덕철학자였기에 칸트는 동 시대의 정치사상가들이 보지 못한 현실 너머의 지평을 성찰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

칸트의 ‘영구평화론’ 또한 공화정체를 가진 국가들 사이에서만 평화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다는 핵심 명제로 인해 “민주평화론” 만큼이나 반쪽 평화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민주평화론”의 ‘분리된 평화’ 주장의 지적 뿌리는 칸트가 명시적으로 그렇게 주장했는지에 상관없이, 칸트의 영구평화 사상 안에 내장했다. 사정이 이렇다 하더라도 칸트의 영구평화 구상을 평가절하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전쟁의 항구적 종식과 세계평화를 향한 칸트의 일념과 진정성을 몰각해서는 안된다. 그의 언명대로, “정의가 사라진다면 더 이상 인간이 지구상에 살 가치가 없을 것”(Rawls, 2000:203)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근본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공화제 국가들 사이에서는 평화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맹체를 수립할 수 있지만, 비공화제 나라들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공화정이 아닌 국가들과의 전쟁은 불가피한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영구평화는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상황이 이렇다면, 영원한 평화만큼이나 영원한 전쟁이라는 주장 또한 가능하지 않은가? 이러한 물음에 칸트는 애매한 해결책을 내놓았다. 그는 전쟁 그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체제전환을 목표로 하는 ‘정당한 전쟁’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칸트는 ‘영구평화론’의 다섯 번째 예비조항에서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헌정체제와 정부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Kant, 1991c:96)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칸트 사후에 유럽의 정치현실은 비관적이었다. 영구평화에 대한 그의 열망과 달리 두 차례의 세계전쟁이 발생했다. 이후에도 반세기 이상 미국과 소련 사이에 핵전쟁의 위협이 항구적으로 도사린 냉전을 겪었다. 사정이 이렇다면 결국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실천적 적실성을 상실한 이상주의의 산물에 지나지 않은 것은 아닌가? 국내적으로 어떤 정치체제를 취하느냐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를 동등한 실체로 취급하는 현실주의와 달리 ‘보편이론’이 될 수 없지 않은가?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자극받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⁹⁾에 대해서 월츠(Waltz, 1978), 브레진스키(Brezinski, 2000), 미어샤이머(Mearsheimer, 2004) 등 현실주의자들의 평가는 냉담한 편이다.

“국가들 사이의 갈등은 피할 수 없으며, 전쟁은 하나의 자연법칙처럼 반복된다. 국제정치의 무정부성이 가져오는 압력은 압도적이기 때문에 국내정치적 차이로는 극복할 수 없다. 국내정치로 국가의 행동과 국제정치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일종의 환원주의로서, 개별사안에 국한한 서술이지 일반적인 현상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보편이론은 아니다” (이근육, 2009:143-144).

9) 도일은 자유주의 국제관계 사상을 스펀테에 영향받은 자유주의적 평화주의, 마키아벨리 사상이 그 뿌리인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공명하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로 구분한다. 이에 대해서는 도일(Doyle, 1986) 참조. 이에 달리 칸트를 제국주의자로 보는 시각 역시 존재한다. 박배형(2016)은 칸트의 평화사상에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요소가 들어 있음이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대쉬(Desch, 2011)와 같은 학자는 칸트의 사상에 제국주의적 성격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는 자유주의(liberalism)와 비서구사회에 대한 폭력적 개입은 양립 가능할 뿐만 아니라 흔하게 위대한 자유주의 사상가들과 연결되며, 이제 그 사상가들의 목록에 칸트를 추가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잔(Jahn, 2005)은 칸트의 영구평화 사상은 굳건한 반제국주의적 자유주의에 기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비판은 일면 타당한 것이긴 하지만, 정치의 목적이 ‘인간의 선(善, goodness)의 달성’에 있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그다지 적실하지 않다. 왜냐하면, 영구평화를 주장하는 것과 영구전쟁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미칠 현실적 결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정부적 국제 정치구조 하에서 주권국가들에게 국가이익과 세력균형을 목표로 하는 제한적 전쟁권을 인정한다 해도 ‘전쟁’ 그 자체로 올바르게 정당한 것 인간의 가치판단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계속될 수밖에 없다.

칸트의 지적 후예라 할 수 있는 “민주평화론”은 현실주의에서 제기된 비판에 유의하면서 20세기 내내 반복된 전쟁과 평화의 부침 현상을 설명하고 평화가 유지되는 안정적인 세계질서의 수립의 문제를 이론 속에 담아내려 노력했다. 현대의 “민주평화론”에는 두 갈래의 논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하나는 국제정치학파로서의 “민주평화론”이다.¹⁰⁾ 다른 하나는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내재한 인식론적 의미를 계승한 정치철학으로서의 “민주평화론”이다. 대표적으로 톨스의 ‘만민법’ 구상이 여기에 속한다.¹¹⁾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공화제 정부 형태의 제도적 특징으로부터 도출되는 연역적 추론에 근거했다면, 현대 국제정치학의 “민주평화론”은

10) 이 글에서는 국제관계이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주평화론”의 세부사항에 관해 상세히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민주평화론” 학파에 다양한 지류가 있지만 앞서 언급한 두 가지 핵심테제를 수정할만한 이론적 진전 내지 새로운 해석적 관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차이가 있다면,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착안한 두 가지 핵심테제 (Doyle, 1983a;1983b)에 더해, 규범을 보다 강조하는가(Maoz and Russett, 1993) 아니면 국내 정치제도 등 구조에 강조점을 두는가(Schultz, 1998;Mesquita et. al., 1999)의 차이, 민주주의 가치에 추가해서 상호무역, 국제기구가 평화를 가져온다는 소위 ‘평화의 삼각구도’(Russett and Oneal, 2001) 주장, 그리고 민주평화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국가자체의 속성에 기인하는가(Bremer, 1992) 아니면 국가관 관계의 속성, 곧 국가 쌍 속성에 기인하는가(Mesquita and Lalman. 1992)를 다루는 정도이다. “민주평화론”의 쟁점과 유형을 정리한 글로는 이호철(2004), 이해정(2008) 참조.

11) 톨스의 ‘만민법’에 대한 논의로는 박정원(2014), 장동진(2001), 장동진·장휘(2003) 정원섭(2012), 정태욱(2018) 참조.

전쟁과 민주주의에 관한 데이터의 다양한 통계적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경험적 규칙성에 근거한다(이호철, 2004:371). 전쟁 자체를 혐오했던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달리, 민주국가들은 “민주평화론”을 통해 비민주국가와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민주평화론”은 학계보다 국제정치 현장에서 먼저 출현했다. 국제사회를 ‘만인이 만인에 대립하는’ 자연상태와 유사한 무정부적 구조로 이해하는 현실주의적 세계관과 달리 민주주의의 보편화에 의한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국제정치의 혁신을 이뤘다. 그 대표적 성과가 바로 월슨의 민족자결에 근거한 집단안전보장 구상이다. “민주평화론”은 그것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월슨의 14개조 선언과 이를 계승한 루스벨트와 처칠의 대서양 선언, 국제연합 창설 등 미국의 국제주의 외교노선으로 구체화됐다. 국제주의는 한반도의 해방과 대한민국의 성립에도 크게 기여했다. 일제의 패망과 한국전쟁에서 미국주도의 유엔군 파견 역시 “민주평화론”에서 연유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성과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민주평화론”과 국제주의는 근본적 딜레마에 봉착했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팽창주의적 침략국가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마당에 앞으로의 세계는 전쟁이 없는 평화만 가득할까? 미국은 이미 1928년, 전쟁을 국가 간 분쟁해결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켈로그-브리앙 조약’, 곧 ‘부전조약’으로 잘 알려진 ‘전쟁포기에 관한 조약’을 주도한 바 있다. 일본조차 부전조약의 정식 체약국이었다. 그런데 이후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전쟁포기에 관한 조약은 휴지조각이 돼버렸고, 인류는 1차 세계대전 보다도 더 큰 참화를 겪지 않았는가?

이에 대한 미국의 해결책은 민주주의 국가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예외적 조건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은 비민주주의의 국

가에 대해서는 군사력 우위를 확고히 함으로써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억지전략과 동전의 양면이다. 그런데 문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비민주주의 국가가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추축국에 맞섰던 소련을 위시한 공산주의 진영이었다는 점이다.

사정이 일변하자, 국제주의는 한편으로는 윌슨과 루스벨트의 ‘민주평화’ 외교정책을 계승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진영논리에 입각한 기독교적 전쟁관을 부활시켰다. 그 결과, 우적관계에 입각한 정의의 전쟁론이 ‘민주평화’의 이름으로 호명됐으며, 미국은 전 세계인들의 자유를 수호하는 십자군 역할을 자임했다. 봉쇄정책에 입각한 미국의 냉전전략,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테러와의 전쟁은 이러한 선과 악의 이분법적 대결구도 하에서 치러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¹²⁾

“민주평화론”에 내장된 전쟁과 평화의 관점은 자칫 선과 악의 이념 대결로 비화할 경우, 전쟁의 한도를 설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에 근거한 세력균형보다 가공할 폭력적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맥아더는 한국전쟁 중에 공산주의와의 ‘최후의 전쟁’(Armageddon)을 벌이려 했다. 트루먼 행정부의 발 빠른 대처로 맥아더는 즉각 해임됐고 국제적 위기는 잦아들었다. “민주평화론”에 내재한 두 가지 해석이 일찍이 정면에서 충돌한 것이다.

12) 이해정(2008:130)에 따르면, “민주평화론”은 냉전 종식 이후 미국 패권의 지구적 확산을 정당화하는데 이용됐다. 9.11 테러 이후에는 테러의 근본원인을 미국이 구현하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근대성의 부정으로 간주하는 부시 행정부에 의해 대테러전쟁의 궁극적 승리를 보장하는 전략적 지침으로까지 설정됐다(신육희, 2002; Zelikow, 2003; 전재성, 2006).

IV. “민주평화론”의 진화가능성: 존 롤스의 ‘만민법’ 사례

“민주평화론”은 더 이상 적실성이 없는 이론인가, 아니면 비판적 진화과정을 통해 선용 가능한 이론일까? “민주평화론”이 명실상부 평화의 이론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들 끼리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공리가 아닌 보다 엄밀한 논증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역사 데이터에 입각해 귀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다음이 보다 중요한 과제인데, 민주주의 국가가 상호전쟁을 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비민주주의 국가와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에 도달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평화이론을 분명하게 정초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평화와 전쟁의 조건을 엄밀히 확정하려 했던 롤스의 ‘만민법’ 논의는 향후 “민주평화론”의 진화과정에 있어 좋은 길잡이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롤스는 “인권을 보장해주는 만민법에 대한 합의는 자유주의 사회들에만 국한되는 합의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Rawls, 2000:112)고 전제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사회와 비자유주의 사회, 곧 자유주의적 전통을 갖지 않은 “질서정연한 위계사회”가 동일한 만민법에 합의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럴 경우 만민법은 자유와 인권에 관한 서구적 전통의 특징에 반드시 의존하지 않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자유주의 국가들이 합의할 수 있는 만민법은 따라서 질서정연한 위계사회의 대표자들에 의해서도 합의 또는 채택될 수 있다. 롤스에 따르면, 합당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만민법은 위계사회로까지 확대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확대과정에서 원

초적 입장과 공적 이성은 자유주의적 사회들 간의 합의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원초적 입장에서는 각 국가의 대표자로서의 당사자들은 상호 동등한 조건하에 놓이게 된다. 이 경우, 그가 대표하는 사회 안에서는 기본적인 불평등이 허용될지라도 국제적 차원에서는 평등을 요구할 권리를 인정 받는다. 설령 한 사회에 기본적인 평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해도 그 사회가 다른 국가들에 대한 권리의 주장에서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일은 아니다(Rawls, 2000:115). 따라서 비자유주의 사회의 대표들도 원초적 입장에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합의할 수 있게 된다.

롤스의 ‘만민법’ 구상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선협적 우월성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다른 국가나 사회에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요컨대, 만민법의 객관적 타당성은 결코 그 시간과 공간 또는 탄생 문화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호성의 기준을 만족시키고 자유주의적 및 적정수준의 만민 사이의 공적 이성과 합치하는가에 달려 있다(Rawls, 2000:193).

여기서 롤스의 만민법 구상의 ‘관용관’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만민법을 비자유적 만민에게로 확장하는데 있어 비자유적 만민을 어느 정도 관용해야 하는지를 상술하는 게 주요한 이론적 작업임을 인정한다. 여기에서 “관용한다는 것은 한 국민의 고유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치적 제재—군사적, 경제적 또는 외교적—의 행사를 자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관용한다는 것은 또한 이러한 비자유적 사회들을 만민의 사회의 우호관계에 참여하는 동등한 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Rawls, 2000:98).

그러므로 “비자유적 사회들이 이성, 지성, 그리고 도덕 등의 모든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진실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지 않다는 데 동의”한다고 해서 “비자유적 사회들은 경우에 따라 특

정유형의 제재—정치적, 경제적, 심지어 군사적—를 언제나 적절히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견해에 대한 자유주의적 외교정책의 지침 원칙은, 결과적으로 (이상적인 경우에) 모든 사회가 자유롭게 될 때까지 자유적 사회가 되지 못한 사회들을 자유적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언급이 중요하다.

“합당한 만민법을 고안해내려 하기 전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비자유적 사회들이 항상 정치적 제재를 받아야 할 적절한 대상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만민법의 원칙들이 자유적 만민을 위해 선택되는 두 번째 원초적 입장에 있는 주장을 논의함에 있어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계약당사자들은 평등한 만민의 대표들이며, 그리고 평등한 만민은 상호간에 이러한 평등을 유지하기를 원할 것이다”(Rawls, 2000:100).

롤스의 ‘만민법’ 논의가 지니는 결정적 함의는 호혜원칙에 입각한 공존공영의 국제정치적 원리를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세계에 포괄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외부충격에 의한 정변, 소위 ‘레짐 체인지 (regime change)’ 시도와 같은 불승인주의에 기초한 비외교적 발상은 채택될 수 없다. 왜냐하면, ‘만민법’이 지향하는 ‘민주평화’는 전 세계에 분포한 다층적 사회 간의 합의에 의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의 행동준칙을 구성해가는 정치적 합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관용’과 ‘정치적 다원주의’에 기초한 롤스 식의 ‘민주평화론’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의 관점에서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 ‘만민법’ 구상의 목적이 ‘국제정치에서의 정의실현’이라고 롤스 자신이 밝힌 저술의도를 고려했을 때, 그의 연구가 다른 무엇보다도 탈냉전과 함께 찾아온 국제사

회에서 중국의 부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롤스가 언급한 ‘질서정연한 위계사회’는 일당독재의 위계적 정치체제를 오랫동안 보유했음에도 국제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준비를 하던 중국사회를 암묵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위력에 의한 외부로부터의 체제붕괴를 목표로 하지 않는 한, 중국, 베트남, 쿠바 등과 유사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 북한 역시 ‘질서정연한 위계사회’로 규정할 수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있기 전까지 우리와 견실한 외교관계를 유지한 이란 역시 ‘질서정연한 위계사회’에 포함될만한 자격이 있다. 롤스의 ‘만민법’ 구상을 준거로 “민주평화론”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동시에 동아시아,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행동의 준칙을 구상해 볼 수 있다.

V. 결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두 가지 가치와 그에 따른 외교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며,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위치에 놓여있다. 하나는 민주주의가 평화를 가져온다는 “민주평화론”의 가치다. 다른 하나는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주변국들과 공존, 공생을 도모해야 하는 ‘동아시아-한반도평화론’의 가치다.¹³⁾ 비유컨대, “민주평화론”이 ‘체’(體, body)라고 한다면 한반도평화 실현은 ‘본’(本, soul)이다. 둘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으며, “민주평화론”을 통해 ‘한반도 평화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13)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양상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무력 분쟁’의 관점에서, 동아시아가 다른 지역에 비해 국제질서 재편에 크게 취약하지 않았으며, 독자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유지해 왔음을 잘 보여주는 글로는 이성원(2022) 참조.

우리나라는 전후 ‘미국의 범위’라 불리던 ‘분리된 평화’ 경계 안에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동시에 이룩했다.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놀라운 성취다. 하지만 분단 해소와 남북평화체제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는 한반도문제 해결은 ‘분리된 평화’ 내부가 아니라 그것의 외부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국가인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상대해야 하는 외교적 사안이다. 달리 표현하면, 한반도문제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라는 체제 내부의 동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국제정치적 난제로 전환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향후 ‘분리된 평화’ 내부와 외부에서 작동하고 있는 국가능력 상의 심각한 불균형을 시급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

20세기 미국이 추구한 동아시아 정책의 양대 지주는 문호개방원칙과 불승인주의였다. 미국이 불승인주의 외교원칙을 지속하는 한 한반도문제의 해결은 요원할 뿐 더러 북미 간 군사적 긴장의 증대 역시 명약관화한 일로 여겨진다. 이 경우, 한반도 문제 해결은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한반도의 교착상태가 장기화하여 파국이 초래된다면 대한민국이 최대 피해자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사면초가(四面楚歌)의 난국을 피하려면 북한에 대한 불승인주의 철회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롤스의 ‘만민법’ 논의에서 확인했듯이 “민주평화론”은 북한에 대한 불승인주의 철회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이론적 도구이다. 그것이 또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민주주의적 가치의 본래적 의미가 아닌가.

“민주평화론”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실현이라는 가치를 포용할 수 있을 때만이 인용 혹은 의문부호를 떨쳐내고 명실상부 일반이론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정치적 통일 내지 민족내부의 통일방안인 국가연방(합)제 실현에 앞서 남북이 주도하고 미국, 중국 등 유관국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동북아 평화연합 형성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는 것도 한반도 평화실현의 유력한 방안으로 여겨진다.

이때 평화연합을 구성하는 제1원칙은, 롤스의 만민법 구상을 빌려 표현한다면, 동북아 평화연합의 주권을 합당한 만민법에 입각해서 재구성하고 전통적 전쟁권과 무제한적인 국내적 자율성을 해당 참여국들에게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일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북한에 대한 불승인주의 폐지와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에 놓여 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참고문헌

- 김범석. (2005). 대만민주화와 양안관계의 변화: 민주평화론을 적용하여. *국제정치논총*, 45(2): 57-80.
- 김범수. (2020). 칸트는 자유주의 국제관계론의 주창자인가?: 체계적 성격과 국가주의적 성격을 중심으로 재해석한 칸트의 국제관계론. *국제정치논총*, 60(3): 7-47.
- 김석우. (1997). 민주적 평화와 안보협상. *국제정치논총*, 37(1): 83-107.
- 김석우. (2011). 민주주의와 국제관계의 인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2(1): 231-257.
- 김원식. (2021). 한반도 평화, 칸트에게 길을 묻다. *사회와 철학*, 41: 29-54.
- 김재천. (2004). 민주평화론과 비밀전쟁: 미국의 대칠레 비밀전쟁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8(3): 213-233.
- 김재천. (2009). 민주평화론: 논의의 현주소와 동북아에서의 민주평화 담론. *21세기 정치학회보*, 19(2): 363-383.
- 김종국. (2000). 이성에 의한, 자연을 통한 평화: 칸트의 평화 개념. *철학*, 63: 135-150.
- 김준석. (2014). 칸트 평화 사상의 재조명. *21세기정치학회보*, 24(3): 3-27.
- 마상윤. (2005). 미국의 대외정책과 민주주의 전파동기와 딜레마. *국가전략*, 1(4): 41-67.
- 박배형. (2016). 영원한 평화 그리고 제국주의: 칸트의 평화론과 비서구 세계. *헤겔연구*, 39: 215-241.
- 박정원. (2014). 국제적 정의에 관한 소고: 롤스의 만민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8(4): 311-335.
- 배성민. (2017). 칸트를 넘어선 칸트. *철학논총*, 87: 197-216.
- 신옥희. (2002). 민주적 평화론과 미국의 21세기 전략. *미국학*, 25:

279-304.

- 신옥희. (2006). 다변화된 2차적 상징: 민주평화론과 동북아시아. *한국 사회과학*, 28(1·2): 3~24.
- 오영달. (2016). 남북한 정치체제와 인권 그리고 한반도 평화. *사회과학 연구*, 27(2): 91-113.
- 이근욱. (2009). *왈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서울: 한울.
- 이성원. (2022). 다극체제와 동아시아 안보: 국제질서 재편에 따른 한반도 안보 위협 논의의 재고찰. *분석과 대안*, 6(2): 37-78.
- 이재현. (2013). 칸트 영구평화론 연구: 하나의 철학적 기획. *평화학연구*, 14: 7-23.
- 이재현. (2014). 칸트 영구평화 연구. *사회과학연구*, 30(4): 477-497.
- 이현휘. (2016). 북한 레짐 체인지? 칸트의 영구평화론, 월슨주의, 그리고 국제정치적 파국. *정치와 평론*, 18: 1-35.
- 이혜정. (2008). 민주평화론의 패러독스: 칸트 평화사상의 왜곡과 오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9(2): 129-153.
- 이호철. (2004). “민주평화론” 우철구 박건영 편.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서울: 사회평론.
- 임미원. (2010). 칸트의 영구평화론. *법철학연구*, 14: 49-74.
- 장동진. (2001). 롤즈의 국제사회 정의관. *국제정치논총*, 41(4): 315-336.
- 장동진·장휘. (2003). 칸트와 롤즈의 세계시민주의. *정치사상연구*, 9: 195-222.
- 장세호. (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질서의 변화. *분석과 대안*, 6(2): 5-36.
- 전재성. (2006). *21세기 미국의 변환외교 하영선·김상배 편. 네트워크 지식국가*. 서울: 을유문화사.
- 전재성·박건영. (2004). 국제관계 이론의 한국적 수용과 대안적 접근. 우철구·박건영 편.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서울: 사회평론.

- 정원섭. (2012). 인권의 현대적 역설: 롤즈의 민주적 평화론에서 인권. *철학*, 112: 173-191.
- 정태욱. (2018). 롤즈의 만민법과 한반도 평화와 인도주의 연합. *법철학 연구*, 21(1): 401-442.
- 현인택. (2004). 민주평화와 동아시아의 미래. 이상우 편. *21세기 동아시아와 한국 I*. 서울: 오름.
- Barkawi, T and Laffey, M. (eds). (2001). *Democracy, Liberalism, and War*. Boulder: Lynne Rienner.
- Barnett, M. (2006). Building a Republican Peace: Stabilizing States after War. *International Security*, 30(4): 87-112.
- Bernasconi, R. (2001). Who invented the Concept of Race? Kant's Role in the Enlightenment Construction of Race. in Robert B, (eds). *Race*, Oxford: Blackwell.
- Bernasconi, R. (2011). Perpetual Peace and the Invention of Total War. in Christopher Yates, S. and Eckstrand, N. (eds). *Philosophy and the Return of Violence: This Widening Gyre*. New York: Continuum International.
- Bremer, S. A. (1992). Dangerous Dyads: Conditions Affecting the Likelihood of Interstate War, 1816-1965.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6: 309-341.
- Brown, G. W. (2005). State Sovereignty, Federation and Kantian Cosmopolitanism.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1(4): 495-522.
- Brown, M. E., Sean M. L, and Steven E. M(eds.). (1996). *Debating the Democratic Peace*. Cambridge: MIT Press.
- Brzezinski, Z. (2000). *거대한 체스판: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과 유라*

- 시/아. 김명섭 옮김. 서울: 삼인.
- Caranti, L. (2006). Perpetual War for Perpetual Peace? Reflections on the Realist Critique of Kant's Project. *Journal of Human Rights*, 5: 341-353.
- Carothers, T. (2006). The Backlash Against Democracy Promotion. *Foreign Affairs*, 85(2): 55-68.
- Carr, E. . (2000). *20년의 위기*. 김태현 옮김. 서울: 녹문당.
- Cavallar, G. (2001). Kantian Perspectives on Democratic Peace: Alternatives to Doyle.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7: 229-248.
- Chan, S. (1997). In Search of Democratic Peace: Problems and Promise. *Mersho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4(2): 59-91.
- Clausewitz, C. (2009). *전쟁론*. 김만수 옮김. 서울: 갈무리.
- Desch, M. C. (2007/2008). America's Liberal Illiberalism: The Ideological Origins of Overreaction in U.S.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32(3): 7-43.
- Desch, M. C. (2011). Benevolent Cant? Kant's Liberal Imperialism. *The Review of Politics*, 73: 649-656.
- Doyle, M. (1983a).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Part I.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2(3): 205-235.
- Doyle, M. (1983b).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Part II.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2(4): 323-353.
- Doyle, M. (1986). Liberalism and World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4): 1151-1169.
- Gowa, J. (1999). *Ballots and Bullets: The Elusive Democratic Pea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rrison, E. (2002). Waltz, Kant and Systemic Approach to International Relation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8: 143-162.

- Harrison, E. (2004). Kant and Systemic Theory: A Reply to Weber.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30: 153-157.
- Hurrell, A. (1990). Kant and the Kantian Paradigm in International Relation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16: 183-205.
- Ish-Shalom, P. (2006). Theory as a Hermeneutical Mechanism: The Democratic Peace Thesis and the Politics of Democratization.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2(4): 565-598.
- Jahn, B. (2006). Classical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Context. Jahn, B. (eds). *Classical Theo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hn, B. (2005). Kant, Mill, and Illiberal Legacies in International Affair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9(1): 177-207.
- Kant, I. (1991a). The Idea of a Universal History with a Cosmopolitan Purpose. Reiss, H. (eds). *Kant's Political Writ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nt, I. (1991b). On the Common Saying. Reiss, H. (eds). *Kant's Political Writ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nt, I. (1991c). Perpetual Peace: A Philosophical Sketch. Reiss, H. (eds). *Kant's Political Writ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nnan, G. F. (1984). *The Fateful Alliance: France, Russia, and the Coming of the First World War*. New York: Pantheon.
- Kennan, G. F. (2012). *American Diplomacy 1900-195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issinger, H. (1994). *Diplomacy*. New York: Simon & Schuster.
- Levy, J. S. (1989). The Causes of War: A Review of Theories and Evidence. in Tetlock, P. E., Husbands, J. L., Jervis, R., Paul S.

- Stern, P. S. and Charles T, (eds). *Behavior, Society, and Nuclear War: Volume II*.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ynch, C. (1994). Kant, the Republican Peace, and Moral Guidance in International Law. *Eth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8: 39-58.
- MacMillan, J. (2006). Immanuel Kant and the Democratic Peace. Jahn, B. (eds). *Classical Theo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oz, Z. and Russett, B. (1993). Normative and Structural Causes of Democratic Peace, 1946-1986.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 624-638.
- Mearsheimer, J. J. (2004).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이춘근 옮김. 서울: 나남.
- Mesquita, B. B and Lalman, D. (1992). *War and Reas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Mesquita, B. B., Morrow, J. D., Siverson, R. M and Alastair, S. (1999). An Institutional Explanation of the Democratic Pea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3(4): 791-807.
- Morgenthau, H. J. (1967). *Politics among Nations*. New York: Alfred A. Knopf.
- Pojman, L. P. (2005). Kant's Perpetual Peace and Cosmopolitanism.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36: 62-71.
- Rawls, J. (2000). *만민법*. 장동진 외 옮김. 서울: 이플리오.
- Rosato, S. (2003). The Flawed Logic of Democratic Peace Theor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7(4): 585-602.
- Russett, B. (1993). *Grasping the Democratic Peace: Principles for a Post Cold War Worl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ssett, B. and Starr, H. (2000). From Democratic Peace to Kantian

- Peace: Democracy and Conflict in the International System. Midlarsky, M. (eds). *Handbook of War Studies II*.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 Russett, B. and Oneal, J. R. (2001). *Triangulating Peace: Democracy, Trad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New York: W. W. Norton.
- Schultz, K. A. (1998). Do Democratic Institutions Constrain or Inform? *International Organization*, 53: 233-267.
- Tocqueville, A. (2002). *미국의 민주주의 I*. 임효선·박지동 옮김. 서울: 한길사.
- Waltz, K. N. (1962). Kant, Liberalism, and Wa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6: 331-340.
- Waltz, K. N. (1978).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Boston: McGraw-Hill.
- Zelikow, P. (2003). The Transformation of National Security: Five Redefinitions. *The National Interest*, 71: 17-28.